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260

발의연월일: 2022. 7. 1.

발 의 자:서동용ㆍ권인숙ㆍ김승남

김정호 · 김철민 · 김회재

도종환 · 신정훈 · 안민석

유기홍 • 이동주 • 인재근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 외에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실시함으로써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급격하게 변하는 사회환경과 방대한 지식과 정보가 넘쳐나는 현재는 일과 직업에 대한 다양한 가치관이 존재하고, 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따라 개개인에 대한 진로의 변동성이 증가함에 따라 생애전반에 있어 진로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성인이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찾고, 진로를 인식, 탐색, 준비, 결정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현행 직업능력 향상교육을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으로 범위를 확장하고, 성인에 대한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있도록 함으로써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고 생애주기별로 평생교육의 체

계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3 신설 등).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생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직업능력"을 "직업능력 및 성인 진로개발역량"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직업능력 및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이하 "성인 진로교육"이라 한다)이란 성인이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찾고, 진로를 인식, 탐색, 준비, 결정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진로수업, 진로심리 검사, 진로상담, 진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및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7장 및 제8장을 각각 제8장 및 제9장으로 하고, 제7장(제4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성인 진로교육

- 제40조의3(성인 진로교육의 실시) ① 평생교육기관, 대학, 「진로교육법」 제15조에 따른 국가진로교육센터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진로교육센터는 성인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인 진로교육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	1
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	
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u>직</u>	<u>직업</u>
<u>업능력</u> 향상교육, 인문교양교	능력 및 성인 진로개발역량
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	
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	
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	
다.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u><신 설></u>	6. "직업능력 및 성인 진로개발
	역량 향상교육"(이하 "성인
	진로교육"이라 한다)이란 성
	인이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찾고, 진로를 인식, 탐색, 준
	비, 결정 및 관리할 수 있도
	록 진로수업,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정보 제공, 진
	로체험 및 취업지원 등을 제
	공하는 것을 말한다.
<u><신 설></u>	제7장 성인 진로교육
<u><신 설></u>	제40조의3(성인 진로교육의 실시)

<u>제7장</u> 평생학습 결과의 관리·인 정 <u>제8장</u> 보칙 ① 평생교육기관, 대학, 「진로 교육법」 제15조에 따른 국가 진로교육센터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진로교육센터는 성인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인 진로교육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장 평생학습 결과의 관리・인
정
제9장 보칙